

제20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
의회운영위원회 (2014.09.16)

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



의회운영위원회

<의안번호 제2014 - 53호>

**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심 사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8. 20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의회장
- 다. 회부일자 : 2014. 8. 20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9. 12.

2. 개정이유

- 매년 본회의장에서 총회 일수를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현실에 맞게 연간 총회 일수와 정례회의 회기 일수를 변경
- 제1차, 제2차 정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해 정례일 집회일을 변경.

3. 주요내용

- 연간 총회의 일수 변경 (안 제2조)
 - 80일 이내 ⇒ 100일 이내
- 정례회의 회기 일수 변경 (안 제3조 제1항)
 - 35일 이내 ⇒ 50일 이내
- 집회일 변경(안 제4조)
 - ①항 제1차 정례회는 7월 10일 ⇒ 6월 20일
 - ②항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 ⇒ 12월 5일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어,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6. 참고자료

□ 지방자치법

제47조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 ① 지방의회의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
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54조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·7월 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 중에 열어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 중에 열 수 있다.